

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(2인 이상이 동일 직위일 경우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)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마지막월(3/6/9/12월) 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의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1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2)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정관의 변경
 - (4) 자본의 감소

- (5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6) 양수·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, 매출액, 부채액이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 기준 자산총액, 매출액, 부채총액의 10%이상인 경우
- (7)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8) 배당의 결정
- (9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0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1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3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의
- (4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5)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
- (6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결과보고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.개정 및 폐지 등
- (10)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3) 준비금의 자본 전입
- (4)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5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- (6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이를 위한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
- (7)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(8)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
- (9)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채무인수 및 채무변제

- (10)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
- (11)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
- (12)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
- (13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신규 차입 및 약정
- (14)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
여기타 사고에 관한 사실
- (15) 10억원 이상의 기부
- (16) 자기주식의 소각
- (17)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1)-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이사의 겸업 승인
- (3) 이사회규정의 제/개정 및 기타 각 해당 규정에서 그 개정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회사
규정의 개정/폐지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(4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
- (5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3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
사항
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,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야 하고,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5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두며, 의장이 지명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부칙 <2019. 6. 12. 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장회사 특례) 제10조에서 정한 내용 중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 ①.1.(10)은 이 회사의 발행 주식이 유가증권에 상장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3. 24. 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